

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

「해운법」 제18조,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,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폐업 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12일
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

1. 업체명: 삼정해운 (대표자 강○윤 외 1명)
○ 소재지: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45번길 72, 703호(서대신동3가, 한우리4차)
2. 사업의 종류: 내항화물운송사업
3. 등록번호: BSK3604
4. 폐업일자: 2026.10.12.